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27 일

여 수 시 장

2024/12/27



여수시 조례 제2170호

붙임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6.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7.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8. “근로장애인”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여수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 및 시장이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시장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2. 시장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 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제9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홍보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차량, 편의시설, 보조기기 등 지원
5.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의 지원
6.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비율을 고려한 보호작업장의 단계적인 확대 설치·운영
2. 보호작업장을 통하여 직무기능이 향상된 중증장애인이 발전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의 설치·운영

제12조(장애청소년 직업재활) 시장은 장애청소년의 직업지도, 직업체험, 진로교육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또는 다수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